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---	--

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#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제정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(안 제1조)

나.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(안 제2조)

-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,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: 20대 이상 50대 미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
- 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269(2023. 10. 20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557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,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 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도시교통과장 정강호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)**

제29조(등록기준)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, 보유차고 면적, 영업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 
 <개정 2013. 3. 23.>

**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)**

제61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)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**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)****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(제61조 관련)**

항 목	등 록 기 준
1. 등록기준 대수	가.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: 50대 이상 나.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 소재하고,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: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